

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<p>1. 통보국가: 호주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</p>
<p>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인프라, 교통, 지역 개발, 통신, 스포츠 및 예술부</p>
<p>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</p>
<p>4. 해당제품(HS 또는 국정세울 품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스테이션 왜건 및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하여 주로 10인 미만의 수송을 위해 설계된 승용차 및 기타 자동차(제8702호의 자동차는 제외)(HS 코드: 8703); 도로 차량 공학(ICS 코드: 43)</p>
<p>5. 제목(페이지 수, 언어, 열람방법): 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에 대한 개정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개 초안—신차 효율 기준 개정(NVES 통합일) 결정 2026 • 초안 편집본—신차 효율 기준 결정 2024 (신차 효율 표준 개정(NVES 통합일) 결정 2026에 의해 개정될 경우) • 설명서 초안—신차 효율 표준 개정(NVES 통합일) 결정 2026 • 팩트 시트—신차 효율 기준 면제에 대한 변경 제안(4페이지, 영어), (7페이지, 영어), (6페이지, 영어), (3페이지, 영어) <p>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/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</p> <p>https://members.wto.org/crattachments/2026/TBT/AUS/26_02677_00_e.pdf https://members.wto.org/crattachments/2026/TBT/AUS/26_02677_01_e.pdf https://members.wto.org/crattachments/2026/TBT/AUS/26_02677_02_e.pdf https://members.wto.org/crattachments/2026/TBT/AUS/26_02677_03_e.pdf https://www.infrastructure.gov.au/have-your-say/exposure-draft-new-vehicle-efficiency-standard-amendment-nves-integration-date-determination-2026 지상 교통 배출 감소과 지상 교통 배출 및 정책국 인프라, 교통, 지역 개발, 통신, 스포츠 및 예술부 cleanercars@infrastructure.gov.au</p>
<p>6. 내용: 본 고지는 2027년 7월 1일부터 총차량질량이 3.5t에서 3.855t 사이인 차량이 호주 설계 규정 (ADR) 81/03(경형 차량 에너지 소비 표시) 또는 ADR 114/00(이산화탄소 배출 측정)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, 해당 차량에 대한 '면제 차량'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신차 효율 기준 결정 2024를 개정하려는 호주 정부의 의도를 기술하고 있다.</p>

ADR 81/0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판매되는 총차량질량(GVM) 3.5톤 초과 차량 모델에 대하여, 해당 차량에 연료 소비, 이산화탄소 배출, 에너지 소비 및/또는 배터리 주행거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된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시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.

ADR 114/00은 2027년 6월 30일부터 공급되는 총차량질량 3.5톤 초과 차량(작업용 밴[1] 또는 작업용 트럭[2] 제외) 중 미국(United States)에서 경량 자동차로 간주되는 차량(총차량질량 8,500파운드 또는 3,855kg 미만 차량)이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시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.

이 개정안의 목적은 총차량질량(GVM)이 3.5t에서 3.855t 사이인 차량이 ADR 81/03 또는 ADR 114/00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, 신차 효율 기준법 2024(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Act 2024, NVES Act) 제19조에 따른 규제 대상 기관의 '임시 배출가스 값' 계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NVES Act는 호주에 경형 승용차 및 상용차를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평균 이산화탄소(CO₂) 배출 목표를 설정하며, 이는 차량이 승용차의 대체 수단(예: '픽업' 트럭)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경우 총차량질량이 3.5t에서 4.5t 사이인 차량을 포함하도록 의도되었다. 호주는 2026년 5월 ADR 114/00이 채택되기 전까지 3.5t 초과 차량에 대한 CO₂ 시험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, 현재 총차량질량이 3.5t을 초과하는 차량은 이러한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채택될 경우, 개정 결정은 신규 차량 효율 기준 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면제 결정 제4(1)항의 NVES 통합 날짜 정의를 수정하여, 차량이 ADR 114/00 또는 ADR 81/03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도록 한다. 차량이 해당 ADR 중 하나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, NVES 통합 날짜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ADR이 해당 차량에 적용된 후 12월 31일의 종료 시점으로 유지된다.
- 면제 결정 제4(3)항의 탄소 관련 ADR 정의를 ADR 81/03 및 ADR 114/00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한다.
- 면제 결정 제6(1)조를 개정하여 2026년 7월 1일 직전에 탄소 관련 ADR 준수가 요구되지 않았던 차량 유형은 NVES 통합일 전까지 면제 차량 상태를 유지함을 명확히 한다. 이 면제는 해당 날짜 이전에 차량이 탄소 관련 ADR을 준수하더라도 차량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효하다. 이는 2027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총차량질량(GVM) 3.5톤 초과 차량이 ADR 81/03 또는 ADR 114/00을 준수하더라도 면제 차량 상태를 유지하며, NVES 법에 따른 규제 대상 기관의 임시 배출가스 값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.

총차량질량이 3,855kg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(CO₂) 시험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, 해당 차량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차량 상태를 유지한다. 호주 정부는 2030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량을 신차 효율 표준(NVES)에 포함할 수 있도록, 이들 차량에 어떤 CO₂ 시험 요건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2026~2027년에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.

[1] ADR 114/00의 조항 4.1에 정의된 바와 같음

[2] ADR 114/00의 조항 4.2에 정의된 바와 같음

7. **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** 이 개정안의 목적은 '더 깨끗하고 유지비가 저렴한 자동차: 호주 신차 연비 기준(NVES) 영향 분석(Cleaner, Cheaper to Run Cars: The Australian New Vehicle Efficiency Standard Impact Analysis)'에 명시된 호주 정부의 정책 의도를 이행하는 것이다. 이는 호주에서 일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며 개인 이동 수단으로 판매되는 총중량(GVM) 3.5톤 초과 차량을 포함하기 위함이다. 이 개정안으로 NVES(호주 신차 연비 기준) 적용 대상 차량 수가 연간 약 17,000대, 즉 호주 신차 판매량의 1.35% 정도 증가될 것이다.

교통 부문은 현재 호주 국내 온실가스(GHG) 배출량의 2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소형 승용차와 상용차가 이러한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. NVES는 파리 협정 제4조에 따른 호주의 업데이트된 국가 결정 기여(NDC)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. 환경 보호.

8. 관련 문서:

- [2024년 신차 효율 기준 결정](#)
- [2024년 신차 효율 기준법](#)
- [차량 표준\(호주 설계 규정 81/03 – 경형 차량 에너지 소비 표시\) 2025](#)
- [차량 표준\(호주 설계 규정 114/00 –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\) 2026](#)

<p>관련 통보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G/TBT/N/AUS/166• G/TBT/N/AUS/194
<p>9. 채택 예정일: 2026-08-31 시행 예정일: 2027-01-01</p>
<p>10. 의견 제출: 의견 마감일: 2026-07-20 []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 WTO TBT 질의처 세계 무역 협상국 외교통상부 캔버라(Canberra) 전화: +(61) 2 6261 1111 이메일: tbt.enquiry@dfat.gov.au 웹사이트: https://www.dfat.gov.au/</p>